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의 견 서

(김태수 의원)

2024. 2.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27호,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8조의2 제1항의

‘시장은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거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을 차폐하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첫째,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으로 표현할 경우 그 권고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된 내용과 같이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여 권고대상을 명확히 하고

둘째,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거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을 차폐하기 위한 공법’과 관련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만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에서 정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오염물질에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만 규정하여 라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자재 방출 라돈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수립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2019.11)」에 따라 관리되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거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을 차폐하기 위한 공법’ 대신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련 조문의 취지에 맞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폐 등 공법’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